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혼·재혼 증가에 따른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제약들을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 상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삭제근거 추가(안 제6조의2제7항 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이 등록된 체류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세대원이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삭제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등이 체류지에 실제 체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제15조제3항제2호 중 “전입신고를 할 때”를 “전입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7조의4를 제17조의5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7조의4) 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0호의4서식의”를 “별지 제10호의5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체류”를”을 ““해외체류” 또는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을”로 하고,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에만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

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출국 후”는 “변경 후”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송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신고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 변경인 경우에는 해외체류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와 대조·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를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이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고의무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제2항의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를 “시·군·자치구”로, “제출”을 “제출(「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그 확인에”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치를 의뢰하거나 그 확인에”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및 혈액형(제35조제4항에 따라 수록하는 경우에만 표기한다)”를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생일·주민등록기관 및 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7조제11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단서 중 “50만원”을 “185만원”으로, “3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단서 중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을 “채무금액이 185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10만원)”으

로 한다.

별표 3 제2호사목 중 “「국적법」 제14조”를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한 자료,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러목 중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을 “제3조 및 제6조”로 한다.

너.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9호의2서식, 제10호서식, 제10호의2서식, 제10호의3서식, 제10호의5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15호의2서식, 제15호의3서식, 제15호의4서식, 제16호서식, 제16호의2서식, 제16호의3서식, 제17호서식, 제17호의2서식, 제17호의3서식,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제18호의3서식, 제18호의4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서식, 제25호서식, 제26호서식, 제27호서식, 제28호서식, 제29호서식, 제30호서식, 제31호서식, 제32호서식, 제33호서식, 제34호서식, 제35호서식, 제36호서식, 제37호서식, 제38호서식, 제39호서식, 제40호서식,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및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제7항, 제15조제3항제2호, 제17조의4, 제17조의5제1항 및 제6항, 제27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별지 제9호,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의5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개인별 주민등록표															
성명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등록 기준지	1											확인(인)			등록기준지 변경사유										
	2																								
	3																								
주 소 이 동 사 항	주소 (통/반)										전입		전출		변동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영주 권 (지역)		채류 자격		등록 상태		
	1											· · 확인 (인)		· · 확인 (인)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주 민 등 록 증 발 급	· · 발급		(인)		(사 진 1)		(사 진 2)		(사 진 3)		경 유 기 관	1			작성구분										
	· · 재발급											2			최초 작성		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직급·성명		(인)		
	· · 재발급											3			재작성 사유		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직급·성명		(인)		
	· · 재발급											4					재작성 사유				세대주 확인		(인)		
	· · 재발급																								
예비란 ※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8 -																									

※ 등록 상태는 [] 거주자, [] 거주불명자, [] 재외국민 중 등록대상에 맞게 표시

268mm×190mm(백상지 200g/㎡)

세 대 명 부						
행정기관			출력일자:			
출력범위			제 이 지:			
일련 번호	세대주 성 명	주 소	변동일자 사 유	세 대 원 수 가족/동거 (남/여)	세대주(원) 확 인 (서명/인)	통장·이장 확인 (서명/인)
	생년월일(남/여)					

※ 색인부 내용 중 전입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를 활용하고, 전출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를 활용합니다. 이 칸은 서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행정기관:
출력범위:

출력일자:
페이지:

일련번호 접수번호	전입일 전출일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세대전부/일부	전출자 성명 (가족/동거) (남자/여자)	주소	전출지 (전출지 기관명)
--------------	------------	--------------------------	---------------------------	----	------------------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행정기관:
출력범위:

출력일자:
페이지:

일련번호 접수번호	전입일 수령일	전입자 성명 전부/일부(가족/동거, 남자/여자)	전거주지 (기관명)	비고
			전입자 주소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행정기관:
출력구분:

출력조건:

출력일자:
제 목:제 이 지: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 자)	세대주 성명	등 록 기 준 지 주 소	부여일자 및 사유	부여자	확인자 (주무·담당)
----------	-------------------	--------------	--------	------------------	--------------	-----	----------------

364mm × 257mm [백상지(120g/m²) 또는 백상지(80g/m²)]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제 목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요구하오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현주소			
번호부여당시주소			
주민등록 번호	착오번호(×)		
	정정번호(○)		
정정사유			

불입: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 (직위 / 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 / 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 / 직급)	서명
---------------	----	---------------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정정(반송) 통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 또는 반송을 통보합니다.

성명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현주소			
번호부여당시주소			
주민등록	착오번호(×)		
번호	정정번호(○)		
정정사유			
반송사유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백상지(80g/㎡)]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 []거주불명 등록 []정정 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관계 기관 통보
	년 월 일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 사항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사유 * (예) 사망, 실종, 가출 등
	[] 정정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등록기준지 ☐ 세대주와의 관계 ☐ 재외국민→거주자	정정 전	정정 후
	☐ 세대주 변경 ☐ 세대 분가 ☐ 세대 합가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재혼가정이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모)-자녀로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여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기 변경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말소 []거주불명 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말소 []거주불명 등록 []정정)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150g/㎡)]

[]말소 []거주불명 등록 []정정 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관계 기관 통보	
		년 월 일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대상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 사항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사유 ※ (예) 사망, 실종, 가출 등	
	[] 정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세대주와의 관계	정정 전		정정 후	
	□ 세대주 변경 □ 세대 분가 □ 세대 합가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 재혼가정이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모)·자녀로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여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표기 변경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에 따라
([]말소 []거주불명 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말소 []거주불명 등록 []정정)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유의사항

-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을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 등록 사항 정정을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말소·거주불명 등록·정정 신고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말소, 거주불명 등록, 세대주 변경**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로서 재외국민의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등록기준지 통보
	년 월 일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첨부 서류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주소
세대주	

위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확인**

년 월 일

주민등록신고서(재외국민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등록기준지 통보	
		년 월 일	(인)	
세대주 정보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한자)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내거소 신고번호	영주 국가 (지역)	체류 자격
기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
-------	--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세대주
	주소	

위와 같이 주민등록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영주귀국하여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해외체류 [] 신고서 [] 신고 철회서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	-----	---	---	---

현 주소	(시·도)	(시·군·구)
------	-------	---------

※ 해외체류신고(철회)자 (총 명)

해외체류 신고(철회)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연락처)

해외체류주소	(국가명)	(도시명)	(연락처)
--------	-------	-------	-------

해외체류시 숙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아래 사항은 세대주가 출국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남은 세대	남은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연락처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 해외체류신고 [] 해외체류신고 철회)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출국하려는 사람과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2.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3.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4.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5.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체류 자격’ 칸에는 영주, 가족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商用),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
-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 해외체류신고 [] 해외체류신고 철회)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 이후 최초로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에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지로 주소가 변경됩니다.
-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하지 않는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해외체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해외체류’ 로 구분되어 신고된 주소지로 주소가 변경됩니다.
-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나도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국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는 ‘위임장’ 칸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자를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출국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명부 구성 및 세대주 확인 등을 위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해외체류 시 속할 세대의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층·호수’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해외체류신고(철회)서 접수증

* 신고서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5서식]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	-----	---	---	---

귀국 전 해외체류지	(국가명)	(도시명)	(연락처)
해외체류 신고된 국내 주소지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귀국신고자 (총 명)

귀국한 사람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1				
2				
3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귀국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귀국신고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귀국한 사람의 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귀국한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귀국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귀국한 사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출입국 자료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귀국한 사람의 입국 사실증명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귀국한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귀국한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귀국한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입국**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귀국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 거짓으로 귀국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해외체류신고된 국내 주소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귀국신고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의 세대주와 귀국한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 '연락처' 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제목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

귀 기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아래의 사람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가. 등록기준지:

나. 현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2.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가. 신고일자 및 사유: 년 월 일 ()

나. 통보내용

해당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비 고

※ 통보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1) 출생 ~ 10) 혼인(취소)에 따른 해당 내용을 기재함.
붙임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 출생

출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 별	해외출생지의 국가명
()			
()			

※ 1. ()는 다태아 출생 시 그 출생순위를 적음
2. 해외출생자의 경우에는 해외출생지의 국가명을 적음

2)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 별
()		
()		

※ ()는 다태아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 시 그 출생순위를 적음

3) 사망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 별	사망일자

4) 실종선고(취소)

실종선고(취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 별	실종선고(취소)일자

5) 이름 변경

구 분	주민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한 글	-		
한 자			

6) 성·본 변경

구 분	주민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한 글	-		
한 자			

7) 성별 정정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		

8) 생년월일 정정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		

9) 등록창설, 국적상실·이탈, 등록기준지 변경, 인지, 친양자 입양(취소), 친양자 파양, 입양(취소), 파양, 가족관계등록사항 정정, 이혼
(신) 등록기준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	
	-	

10) 혼인(취소)
(신) 등록기준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와 혼인(취소)]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제목 주민등록사항 통보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사항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2. 통보내역

- 신고일자 및 사유: 년 월 일 ()
- 통보내용

성 명	통 보 내 용

※ 통보내용란에는 1) 주민등록번호 정정, 2) 신규등록, 3) 성명 정정에 따른 해당내용을 기재함.

붙임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부.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백상지(80g/㎡)]

<신고사유별 통보내용>

1) 주민등록번호 정정

성 명	정정 전 주민등록번호	정정 후 주민등록번호

2) 신규등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3) 성명 정정

정정 전 성명	정정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제목 주민등록사항 통보

「주민등록법」 제1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음을 통보합니다.

1. 기본사항
-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2. 통보내역
- 통보일자 및 사유: 년 월 일 ()

○ 통보내용

성명	통보된 내용	통보 사항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별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주소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등록기준지 통보 접수처리부

번호	월일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 기관명	통보사항	확인 및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지 회신

268mm×190mm[백상지(80g/㎡)]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뒤쪽 유의사항, 작성방법 참고)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전입 사유 (※주된 1개만)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 편의 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것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유의사항

1.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2.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3.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방법
그요요법

1.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2.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재등록신고서

※ 3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진 곳)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방문 신고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 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1			5		
2			6		
3			7		
4			8		

당사자 확인	※ 재혼가정이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모)·자녀로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여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기 변경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방문 신고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입 사유 (※ 주된 1가지)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것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자(재등록자)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7.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전입 [] 재등록신고서 ([] 재외국민 [] 해외체류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 방문 신고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진)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영주 국가 (지역재외국민만 해당)	체류 자격 (재외국민만 해당)	비 고	
1						
2						
3						
4						
당사자 확인	※ 재혼가정이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모)·자녀로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여부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표기변경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입 사유 (※ 주된 1가지)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또는 해외체류자) 본인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또는 해외체류자)

(서명 또는 인)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2.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3.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 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전 세대주나 본인(전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작성합니다.
6.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7.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 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8. 체류자격은 영주, 가족 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商用),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9.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10.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수)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국외이주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국외이주자 및 이주하여 사는 곳	국외 이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고			
	국외이주지 주소	(국가명)		(도시명)				
현재 사는 곳 (주민등록지, 거주불명 등록지)	구분	[] 세대 모두 이주 [] 세대주 포함 일부 이주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주						
	주소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이주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 국외이주신고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신고(외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거짓 국외이주신고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이주신고하는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국외이주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해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해외이주신고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주국가 (지역)	이주종류 (체류자격)	해외이주 신고일자	비고

끝. ※ 위 서식은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시 사용

발신명의

작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국외이주신고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국외이주신고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주국가 (지역)	이주종류	국외이주 신고일자	비고

끝. ※ 위 서식은 행정안전부에서 국외이주신고자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 시 사용

발신명의

작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국외이주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국외이주신고자 중 출국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국일자	이주 국가 (지역)	비고

끝. ※ 위 서식은 법무부에서 국외이주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시 사용

발신명의 **작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국외이주포기신고서

국외이주 포기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국외이주신고지		(국가명) (도시명)			
국외이주신고일		포기 사유		포기 대상	☐ 세대 전부 ☐ 세대 일부
국외이주포기신고자 인적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국외이주포기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해외이주포기신고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동반가족 중 동시 포기자 명단 포함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주 예정국	해외이주포기 신고일자	포기 사유	비고

끝. ※ 위 서식은 외교부에서 해외이주포기신고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시 사용

발신명의

작성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현지이주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	출국시 최종주소	현지이주 일자	이주 국가 (지역)	체류 자격

끝. ※ 위 서식은 외교부에서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시 사용.

발신명의

작성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재외국민 [] 출국 [] 출국포기신고서

재외국민 출국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상 주소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현재 사는 곳 (출국신고 시 주소)	구분	☐ 세대 모두 출국(포기)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출국(포기)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는 세대 일부 출국(포기)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주 포함 세대일부포기 출국한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이주하여 사는 곳 (국외이주지)	재외국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이주 국가	(국가) (지역)				

* 출국자(총 명), 출국포기자(총 명)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

「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 출국 [] 출국포기) 신고를 합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외국민 본인과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의 ([] 출국 [] 출국포기)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재외국민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에서 국외이주지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을 포기하려고 할 때는 재외국민 출국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거짓 출국, 무단 전출을 하거나 출국신고를 한 사람이 1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 출국자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통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가 출국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연락처를 작성합니다.
- 이주하여 사는 곳(국외이주지)은 재외국민 출국신고자만 작성합니다.
- 국외이주지에는 이주의 주체인 재외국민 본인의 성명을 쓰고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 '이주 국가' 칸에는 이주 예정 국가명과 지역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 출국자, 출국포기자를 작성하는 칸에는, 재외국민 출국신고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의 인적 사항을 작성하며, 출국포기신고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 중 동시 포기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작성합니다.
- '연락처'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출국신고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국신고일자	이주 국가 (지역)	비고

끝. ※ 위 서식은 행정안전부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명단을 법무부에 통보 시 사용.

발신명의

작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출국일자	이주 국가 (지역)	비고

끝. ※ 위 서식은 법무부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시 사용

발신명의

작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재외국민 등록자 명단 통보

년 월 일자 재외국민 등록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체류 주소 (거소)	체류 목적 및 자격	비고

끝. ※ 위 서식은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 시 사용

발신명의

작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사실조사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전화번호		
조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조사개요	조사이유			조사일시		
	조사결과					
조사내용	현장방문	☐ 확인	☐ 미확인	※ 수도·전기·가스 사용여부, 우편수령 여부, 취사·가재도구 존재 여부 등 생계·숙식 여부를 확인		
	대상자진술	☐ 확인	☐ 미확인	※ 대상자 부재 시,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대상자의 휴대전화기 등 록된 경우 통화 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참고인진술	☐ 확인	☐ 미확인	※ 이·통장, 주변 주민 등 면담 및 진술여부·일시·조사내용 등 확인		
	종합의견	※ 조사방법 및 전입 이후 거주상태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되, 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진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용지가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확인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이 (통) 장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사실조사서에는 신고의무자(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증, 사실조사원 증명서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실조사원 증명서

발급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3
cm

2.5cm

사 진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함.

○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 및 출장소장 ㉠

↑

↓

8
cm

←

→

6cm

60mm × 80mm [백상지(150g/㎡)]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이 증표는 사실조사 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 호

최 고 장

[] 법 제20조 [] 법 제20조의2 [] 법 제24조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세대주의 성명	
최고내용	()에 대한 신고 또는 신청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 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주민등록,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집니다.
※ 최고 후 위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담당자: 문의전화:)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인

제 호

최 고 장 수 령 증

성 명	외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세대주의 성명	
최고내용		수령자	(서명 또는 인)	수령일
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최고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담당자: 문의 전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 신고 사항
※ 작성 예 홍 * 동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제 호

직 권 조 치 통 지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년 월 일 직권조치()했음을 통지합니다.
(문의전화: 담당자:)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제 호

직권조치통지서 수령증

성 명	외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세대주의 성명	
조치내용		수령자	(서명 또는 인)	수 령 일
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고 제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세대주성명	성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0일		
신청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사항	이의신청 내용					
	처분통지서 받은 날 또는 공고일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 및 취급자인		결정 사항		결정서 통지자	일시

[별지 제26호서식]

11cm	이의신청 심사결과서	
	결정제호	
	제목	
	결정내용	
	이의신청자	
	주소	
	성명	
	접수연월일	
	결정연월일	
	통지연월일	
	담당자	
주민등록표		등록기준지 통보

(행정기관명)	
결정제호 200 . .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수신주소	
성명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2. 이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내용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제 호

주민등록표 재작성 통지서

현 재 세대주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귀 세대의 주민등록표를 「주민등록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작성하기 위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오셔서 확인(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담당자:).

- 이 유:
○ 지 참 물: 세대주 도장 및 주민등록증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 재작성사유: 1. 주민등록표의 멸실 또는 손상 2. 세대주 변경

.....제 호

주민등록표 재작성 통지서 수령증

세대주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 유		수령자	(서명 또는 인) 수령일
비 고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고 제 호

주민등록표 재작성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고자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신고(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까지 확인(신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의 새로운 세대주로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담당자:)

○ 지참물: 세대주 도장 및 주민등록증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인

현재세대주성명 새로운세대주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재작성사유	신고확인 (년 월 일)

210mm × 297mm[백상지(80g/㎡)]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 성명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개월 간)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발급안내
-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2)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 다)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3) 준비해야 할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4.5cm).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문의전화: 담당자:).
-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작인

..... 자르는 선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수령증

발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인	신청기간	세대주 성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주소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진(남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성명(한글)	성명(한자)	사진(여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거주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신청	[] 미신청	
	※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등기우편 ※ 등기요금 별도 부담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점자 스티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담당 공무원	통장·이장	가족	증명 가능 서류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관계 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원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cm × 세로 3cm)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오른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cm × 세로 3cm)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엄지) 손가락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왼손 엄지평면	왼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cm X 세로 5.5cm)	오른손 네 손가락 평면 (빈칸 크기: 가로 7.1cm X 세로 5.5cm)	오른손 엄지평면

첨부 서류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수수료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없음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기 우편물을 배달시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6.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가 할 수 있으며, 해당 발급 기일 내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25조).

작성 방법

1. 앞쪽 중 ‘담당 공무원’ 칸과 ‘증명 가능 서류’ 칸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3. ‘통장·이장’ 칸과 ‘가족’ 칸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만 작성하는 칸입니다. ‘가족’ 칸은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1호서식]

주 민 등 록 증 발 급 대 장

연 월 일:

행정기관명:

신 청 번 호	발 급 사 유	주 민 등 록 증 발 급 대 상 자			시·군·구로 부터 수령자 (인)	주 민 등 록 증 교 부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발급번호	비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접수자		구 주민등록증 의 회수자 (인)	교부일자	수령자 (서명/인)		

발급 사유 구분	신규	경신	재 발 급										결	담당자	담 당 (주무)	읍·면 ·동장
			소 계	본실/훼손	용모(사진) 변경	성명 변경	주민등록 번호 변경	주소기재오류	주소변경 란 부 족	영주 귀국	재외 국민	기타				
일 계				/									재			
누 계				/												
주민등록증 교부: 수령누계 [], 교부누계 [], 잔량 [], 당일수령 [], 당일교부 []																

※ 비고: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한 경우에는 "수령자(서명/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 대신 배송완료된 등기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64mm×25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69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간 부족 [] 용모(사진)변경 [] 지문 재등록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 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음 [] 신청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등기우편 ※ 등기요금 별도 부담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신청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관계 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1장	수수료 5,000원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3.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등기 우편물을 배달시도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 수수료를 내는 경우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외과적 시술(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 발급 및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의사항
발급 신청일	유효기간 20○○.○○.○○		1.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 확인서 발급 시 인적사항·사진 및 유효기간에는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하며, 투명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명	한글 한자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주민등록번호			
발급 구분	[]거주자 []재외국민		
주소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진위 확인 방법 1.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82') 또는 정부24(www.gov.kr)를 이용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위 확인 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발급일자과 일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발급된 확인서이며, 이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210mm×8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
에서도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 분실신고서 []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분실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고(철회) 내용	분실일		
	분실(철회) 사유		
주민등록증의 습득(담당 공무원 작성 칸)			
년 월 일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 분실신고 철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분실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철회)인' 칸은 성명과 확인(서명 또는 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철회)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분실자와의 관계

첨부 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 없이 '1382')을 이용하여 신고 사항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기관명

수신자 ()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 통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사항을 통보합니다.

분 실 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전화번호	- -
분실신고 (철회)일자				분실(습득)장소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승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 × 297mm[백상지(80g/㎡)]

주민등록증 회수(인계)대장

인계기관:

인계 연월일:	년 월 일	인계자:	인수자: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회수일자 회수사유
			회수담당 공무원

210mm × 297mm[백상지(80g/㎡)]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연월일	주민등록증 정리 대상자			담당자(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10mm × 297mm[백상지(80g/㎡)]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제공심사 신청서
☐ 이용승인

활용목적				신청수	
법적근거		자료요구항목		자료요구범위	전국()시·도() 시·군·구()
자료제공방식		안전관리대책	수립() 미수립()	자료보관기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자료 ☐ 제공심사 ☐ 이용승인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 통보 1부[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승인신청 시에만 해당됨] 2. 안전관리대책 1부 3. 신청사항 설명자료 1부					

268mm × 19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심사결과표		
신 청 기 관	기 관 명	
	주 소	
관 계 중 앙 행 정 기 관		
신 청 기 관 의 성 격		
가. 설립근거 나. 주요기능(수행업무)		
자료이용·활용목적 및 방법		
가. 자료이용·활용목적 나. 자료이용·활용방법		
요구자료 내용 및 범위		
가. 요구자료 내용 및 범위 ※ 구체적 활용사항 등 자료의 설명 나. 총건수:		

210mm×297mm〔백상지(80g/㎡)〕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타 당 성	가. 자료의 필요성	
	나. 자료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다. 미제공 시 문제점	
적 합 성	가. 요구항목과 활용목적의 적합 여부(신청자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나. 해당 업무와 신청자료의 부합 여부	
공 익 성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여부	
	나. 자료활용에 따른 수혜범위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안전관리대책		
가. 안전대책 수립 여부 나. 수립내용의 적정성 - 시설보안의 적정성: - 관리책임자 지정: - 자료의 관리등급(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 기타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과 단위까지 기재)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민 등 록 전 산 정 보 자 료 이 용 대 장

일련 번호	신 청 사 항					승 인 사 항		처 리 사 항			사 용 료		비 고
	신청 일자	신청기관명	이 용 목 적	신 청 건 수	이용 주기	승인 일자	요구자료 승인항목	결과통 보일자	제 공 건 수	수령자	부과 금액	납입 근거	

268mm×190mm[백상지(80g/㎡)]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경유)

제목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신청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신청합니다.

1. 신청기관: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및 활용목적:
3.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가. 설치장소의 적정성

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운영자 지정 등 관리책임자 지정
4.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안전관리대책:

- 붙임 1.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1부.
2.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안전관리대책 1부. 끝.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해외체류신고된 국내 주소지	(시·도)		(시·군·구)	
* 변경신고자 (총 명)				
해외체류 변경신고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연락처)

해외체류주소	(국가명)	(도시명)	(연락처)
--------	-------	-------	-------

변경할 국내 주소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아래 사항은 세대주가 변경신고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남은 세대	남은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연락처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변경신고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변경할 사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신고한 국내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귀국신고를 하여야하고, 귀국 후 거주할 주소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국내주소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변경하려는 해외체류자는 출국 전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에만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 변경할 사람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변경할 사람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변경할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변경할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방법

-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 ‘변경신고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변경될 주소의 세대주와 변경할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 변경하려는 사람이 변경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변경신고 시 속할 세대의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층·호수’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만 변경하려는 경우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으로**, 남은 세대의 세대명부 구성 및 세대주 확인 등을 위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사실조사 확인서

접수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확인사항	세대주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소		
	변동일자	사유	
	세대원수	가족/동거 (남/녀)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원) 확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1. 사실조사서에는 신고의무자(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등)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확인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서만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실조사 확인서 제출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확인자의 위치정보가 필요합니다.

확인자의 위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의 위치정보를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송하여 실제 주민등록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세대방문을 통한 확인 등으로 갈음됩니다.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 ⑥ (생략)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해당 외국인등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⑧ ~ ⑩ (생략)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1. (현행과 같음)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삭제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등이 체류지에 실제 체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④ (생략)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 전입신고 후 신고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에만 행정상 관

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출국 후”는 “변경 후”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송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신고한 해외체류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 변경인 경우에는 해외체류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변경할 주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u>별지 제10호의4서식의</u>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u>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u> ⑤ <u>변경할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와 대조·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를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이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u> 제17조의5(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① ----- ----- ----- ----- ----- <u>별지 제10호의5서식의</u> ----- ----- ----- ----- -----.		② ~ ⑤ (생략)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체류자의 입국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외체류자가 입국한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② (생략) <u><신 설></u> ③ (생략)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① ~ ③ (생략) ④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경우 그 신청절차와 수록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되, 혈액형의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해외체류” 또는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을 ----- ----- -----. 1. 2.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의무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제2항의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	---	--

검사기관 · 검사방법 · 확인절차
등 혈액형에 관한 의학적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 (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작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군·

자치구

-- 제출(「전자정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규격 및 수록사항의 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생 략)
2.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표기할 사항: 성명·사진·주민등록

④ -----

----- 관계기관의 장에게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그 확인에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
-----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u>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 및 혈액형(제35조제4항에 따라 수록하는 경우에만 표기한다)</u> 3.·4. (생 략) ② (생 략)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u>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u> ② ~ ⑧ (생 략)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⑩ (생 략) ⑪ <u>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u>	<u>호·주소·발생일·주민등록기관 및 재외국민(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한정한다)</u>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 ----- ----- ----- 신청[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제8항----- -----
--	---

로 정한다.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42